

=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=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」 본문 중 어문규범과 명칭 등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맞도록 표기하고,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·정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본문 중 어문규범과 명칭 등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12조)
- 나.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(안 제7조제1항, 제9조 제2항, 제13조, 제19조, 제25조 제1항, 제41조제2항, 제50조, 제66조의2제3항, 제67조제2항)
- 다.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(안 제7조의2, 제9조제3항, 제9조의2, 제11조의2, 제14조의2, 제15조제2항, 제19조제2항, 제20조제3항, 제25조제4항, 제39조의2, 제48조제6항, 제50조의2, 제52조제4항, 제65조제4항, 제65조의2, 제66조의2제4항 · 제5항 · 제6항, 제69조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타사항 : 타시·도, 자치구의회 회의 규칙

4. 검토의견

본 개정규칙안은 '92년 제정이후 '98년까지 3차례 부분적 개정은 있었으나 현재 의회운영상 미흡했던 부분과 불명확함으로써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문 등을 개정·보완하고 일부 어문규범과 명칭 등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 표기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써

- 전국 동시지방선거후 처음과 후반기 의장·부의장의 선거일 조정과 임기 개시일을 명시하고 의장·부의장 보궐선거 당선자에 대한 다른 직과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음
- 또한 구정질문의 문답방식과 질문순서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 하고 의안 제출의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집행부와 사전 의견조율에도 원활을 기하였으며

본회의에 부의하는 의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결산심사시 의안의 회부,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규정 사항도 추가 신설하였음

-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안의 표결 장소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본 개정안은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내부 규율을 보완·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함.
- 본 규칙안을 면밀히 검토한바 '98년 일부 개정후 그 동안 개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던 부분과 특히 그동안 상위법에는 엄존하고 있으나 빠져있었던 의장·부의장의 임기개시일 명시 및 의장 사고시 직무대리 지정 조항 등 기초적인 사항을 추가 보완하였음
- 그러나 당초 본 규칙 제정시 상위법에 너무 의존하다보니 아직도 내용의 문구 중 상위법과 구체적으로 동일한 어법이 많아 다소 아쉬운 점도 있음
- 향후 「사하구의회 회의 규칙」은 제5대 의회를 운영하면서 우리구의회의 실정에 맞추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 개정 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.